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8. 24.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화성시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

가. 제안이유

□ 추진 필요성

- 본 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동탄보건지소에서 직영으로 운영 후 2013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선형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에 대해 교육, 운동, 영양, 홍보캠페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뇌혈관질환 선형질환자와 전단계자를 조기발견 및 예방하는 시비 100% 추진 사업이며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의 위·수탁운영사업이 2023. 12. 31. 만료됨.
- 화성시민 중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대사증후군 환자이거나 고위험자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조기발견하고 질 높은 비약물 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운동지도사 등의 전문인력이 필요함.
- 공공보건사업 참여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이나 병원 또는 병원 이상의 비영리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화성시만성질환관리센터의 설치 등)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만성질환 비약물 관리 서비스
-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의 질환·영양·운동부분과 관련된 서비스
- 생활터로 찾아가는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인식개선 · 홍보사업
- 만성질환관리의 중앙정책방향에 따른 사업기획 및 수행, 평가
- 그 밖에 만성질환관리사업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기관 시설 및 개요

- 위탁시설: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 위치 및 규모: 5개소(동탄,봉담,정남,향남,기배)
- 운영인력: 18명(센터장1명, 간호사5명, 운동사7명, 영양사5명)

구분	동탄	봉담	정남	향남	기배
위치	동탄보건소 3층 330.45㎡(100평)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3층 273.23㎡(82평)	정남보건지소 2층 125.65㎡(37.7평)	화성시보건소 2층 84㎡(25평)	기배건강지원 센터 3층 171.3㎡(51평)
인력	센터장 1명				
	전문인력 4명 간호사,운동처방사 영양사,운동지도사	전문인력 4명 간호사,운동처방사 영양사,운동지도사	전문인력3명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전문인력3명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전문인력3명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
장비	체력측정 12종 운동장비 15종	체력측정 8종 운동장비 14종	체력측정 7종 운동장비 2종	체력측정 7종 운동장비 2종	체력측정 6종 운동장비 4종
설치	2008년 11월	2010년 1월	2012년 7월	2012년 3월	2013년 1월

□ 위탁계획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 (2년)
- 위탁신청 자격: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대학, 병원 또는 병원 이상의 재무 구조가 양호한 비영리법인
- 수탁자 선정 방식: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평가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지역사회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참고사항

1) 소요예산액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도 예산액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비 고
총 액	992,296	942,680	-49,616	* 2024년 본예산편성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5% 감액편성
인건비	874,911	918,655	43,744	
운영비	53,111	20,000	-33,111	
사업비	64,274	4,025	-60,249	

※ 만성질환관리센터 건물: 무상사용

2) 사업실적

(기준: 2023년 7월 말, 단위: 명)

구 분	내 용	2023년 실적 (연인원/실인원)
만성질환 예방관리	·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등록관리 · 등록대상자 기초건강검사 및 건강행태 진단 평가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한 운동, 영양, 건강관리 제공	5,602/10,569
대상자 중심 체계적 관리 모형 구축	· 질환별 13주 집중관리 프로그램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 센터별 특화 건강프로그램	850/8,798
	· 캠페인· 특화교육 프로그램 · 간호, 운동, 영양 건강컨텐츠 개발, 홍보	10,764건

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붙임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U-만성질환관리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질병의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조기대응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보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8. 24.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곽매현)

가. 제안이유

- 조례의 근거 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안 제3조제1호).
-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신설에 따른 차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명시(안 별표 제2호).
-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3조제2호, 안 제3조제3호 신설, 안 제4조, 제5조제1항, 별표 제2호 및 별지 제5호서식).
- 별표 제2호의 표현과 중복되는 부분 삭제(현행 별표 제1호다목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 3. 28. 개정된 「지역보건법」과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치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지역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초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산정한 위반횟수별 과태료의 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표현 등도 배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8. 24.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

가. 제안이유

□ 추진 필요성

- 본 사업은 2007년부터 서신보건지소에서 직영으로 운영 후 2008년부터 민간 위탁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화성시 서남부권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을 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통증완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의 위·수탁 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됨.
- 화성시민 또는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비만,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통증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질 높은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공공보건사업 참여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풍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내용

- 3D영상 척추 촬영 및 낙상위험검사 등 기능검사실 운영
- 만성퇴행성 근골격계 질환 사전예방 및 완화 프로그램 운영
- 서남부권 특화사업 및 전문체조, 강의, 지도, 운동
- 낙상 및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건강운동 교육 실시
- 그 밖에 근·골격계사업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탁시설 현황

- 시설명: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 위치 및 규모: 2개소(서신, 우정)
- 운영인력: 7명(센터장 1명, 운동사 5명, 영양사 1명)

구분	서신센터	우정센터
위치	서신보건지소 1층 51.8㎡(15.7평), 2층 118.8㎡(36평)	우정보건지소 2층 종합운동실 104.5㎡(32평)
인력	센터장 1명	
	운동지도사 3명	운동지도사 2명, 영양사 1명
장비	검사장비 3종, 운동장비 9종	검사장비 2종, 운동장비 5종
설치	2008년 11월	2018년 5월

□ 위탁 계획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2년)
- 위탁자의 자격: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 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
-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평가
 -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계획의 전문성, 지역사회 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참고사항

○ 민간위탁 소요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시비100%)			비고
	2023년	2024년	증감액	
총 계	391,234	371,672	△19,562	2024년 본예산 편성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5% 감액 편성
인건비(급여, 퇴직금 등)	343,755	329,106	△14,649	
사업비(사업 및 운영비)	47,479	42,566	△4,913	

※ 2024년 본예산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실적

(기준: 2023년 7월 말, 단위: 명)

년도	실인원(명)				연인원
	프로그램 참여		교육 및 캠페인	총합계	
	내소	출장			
2015	2,932	3,447	2,459	8,838	43,655
2016	3,281	3,677	1,948	8,906	44,315
2017	3,003	2,819	2,411	8,233	55,529
2018	3,686	2,058	2,149	7,893	66,642
2019	4,885	2,763	2,254	9,902	81,403
2020	1,896	496	808	3,200	10,509
2021	1,223	556	265	2,044	5,505
2022	2,986	170	802	3,958	20,471
2023	3,301	180	673	4,154	26,811

※ 2020년부터 2022년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한 사업 잠정 중단 및 연기되어 비대면 사업과 최소대면사업으로 운영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붙임1]

○ 관계 법령 [붙임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웰빙건강클리닉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근골격계 질환 및 비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보건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3. 전성균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8. 24.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전성균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제정안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제정의 일차적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임신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시행함으로써 출산율 향상과 더불어 모자보건 증진을 도모하려는 데 제정의 의의가 있음.

나. 주요내용

-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 (안 제5조).
-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신생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난임극복 지원, 그 외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담고 있으며,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질병에 취약한 임신부와 영유아의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중요한 인적자원들에 대한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는 동시에 출생률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3. 송선영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8. 24.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송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에서 ‘영유아’를 삭제하여 그 적용범위를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추가함으로써 지원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려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발의된 기존의 조례안과 금번에 새롭게 발의된 「화성시 모자보건 조례안」 간의 중복되는 수혜대상인 “영유아”의 지원범위를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 검토결과, 양 조례간의 충돌 또는 중복 가능성을 일소할 뿐만 아니라 조문의 표현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3. 전성균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8. 24.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전성균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미디어센터 내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의 개방 취지에 맞추어 장비사용료를 면제하려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음.

나. 주요내용

- 스튜디오 장비사용료 면제 (안 별지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미디어센터의 장비사용료 중,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의 사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스튜디오 내 각종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자를 동반하여 출입하도록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영상스튜디오와 소리스튜디오의 개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장비사용료의 면제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비 조작법 숙지자가 출입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장비와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3. 송선영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8. 24.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송선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제정안은 거리공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의 근거를 마련 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거리공연가들에게는 보다 많은 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에게는 더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도시로 성장하려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음.

나. 주요내용

- 거리공연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거리공연 장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최근 대도시 등을 기점으로 하여 주목받고 있는, 일명 “Busking” 이라 불리는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고 공연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 및 운영, 거리공연 활동지원, 홍보, 거리 공연가 간의 교류협력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거리공연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풀뿌리 예술가” 들의 발굴이 용이하도록 시 차원의 주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거리공연의 특성상, 유명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일시적으로 공연을 행하는 것이 일상적인 만큼, 익명의 거리공연자들에 대한 지원방식 및 선별과정 등에 대한 철저한 계획수립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8. 24.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9. 11.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여성다문화과장 박노영)

가.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성희롱 고충 처리를 위한 사항을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상 고충처리에 필수적인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심의를 위한 고충심의 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안 제3조).
-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제4조).
-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안 제6조 및 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코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판단,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 검토결과,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판단하는 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 등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인바, 시장이 위원장과 내부위원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내부위원에 대한 시장의 지명권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연직 위원 명시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3조를 수정가결함.

※ 수정대비표 붙임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수정 대비표

[화성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 정 전	수 정 후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u>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u>1. 화성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u></p> <p><u>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u></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u>여성업무 담당 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u>1. 인사업무 담당부서의 장,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u></p> <p><u>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u></p> <p style="margin-left: 20px;"><u>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관련 외부전문가</u></p> <p style="margin-left: 20px;"><u>나.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화성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3. 김미영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 8. 24.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미영 의원)

가. 제안이유

- 본 제정안은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려는데 입법의 일차적 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보다 특별한 보호의무 위에서 청소년부모의 양육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규범적 근거를 갖추려는데 제정의 의의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부모가정의 정의 (안 제2조).
- 청소년부모 등 지원계획 (안 제7조).
- 청소년부모 등 지원사업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 출산, 학업, 취업, 자녀양육, 보건, 주거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혜대상들로 하여금 안정된 삶의 영위를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청소년 부모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두려움·경제적 어려움·사회적 편견 등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생명의 존엄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청소년 부모들의 특성상 자신들이 부모가 된 사실을 사회적으로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부서에서는 청소년 부모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사업의 효과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8. 24.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정책과장 이항순)

가. 제안이유

- 가계부채 증가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막대한 부채상황의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금융취약계층에게 각종 구제제도와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상담 및 교육,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알선과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및 재무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금융복지상담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가계부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시민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동시에, 건전한 금융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8. 24.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아동친화과장 이연옥)

가. 제안이유

- 아동의 창의적인 체험학습 제공 및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24. 3. 31. 자로 만료됨에 따라,
-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진근거

-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시설개요

- 시 설 명: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 위 치: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146
- 시설규모: 대지면적 3,545.40㎡, 연면적 12,885.87㎡
(지하 3층 ~ 지상 4층)
- 위탁기간: 2022. 4. 1. ~ 2024. 3. 31.(2년)
- 수탁기관: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석용)
- 운영인력: 36명(센터장 1, 총무팀 10, 시설안전팀 3, 기획관리팀 22)

- 주요사업: 키즈체험관(14개관), 아이누리극장(224석), 전시, 기획프로그램 운영 등
- 2023년 지원예산: 3,600,000천원(시비 100%)

□ 위탁개요

- 위탁사무: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4. 4. 1. ~ 2026. 3. 31.(2년)
- 신청자격
 - 위탁내용(아동·교육·문화·예술 사업) 관련 어린이시설 및 유사시설의 관리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대학
-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에서 심사하여 적격자 선정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 전시 및 기획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어린이 영화상영 및 공연프로그램 운영
 - 부대시설 운영(식당, 카페테리아 운영)
 - 어린이문화센터 건물, 주변 부대시설, 부지전체 토지 등 시설의 전반적인 유지 관리
 - 기타 “시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연간 지원예산(안): 3,420,000천원
 - 인건비 1,763,640천원(기본급 및 제수당 등)
 - 운영비 1,170,190천원(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 사업비 486,170천원(체험관, 기획프로그램, 아이누리극장 운영 등)

□ 향후 추진계획

- 2023. 12.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4. 1.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24. 2. 위·수탁 협약체결
- 2024. 4. 민간위탁 운영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붙임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동의안은 어린이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2024년 3월에 만료됨에 따라, 향후 2년 동안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어린이들에게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에 앞장서는 기관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문화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3. 8. 23.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8. 24.

다. 상 정 일 자 :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2023. 9. 11.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최초 공공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입소 및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화성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선희)

- 본 조례안은 공공 노인복지시설 설립을 통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입·퇴소와 이용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의 위수탁, 운영규정 마련, 수익금의 사용, 회계 및 결산, 시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 검토결과, 시 주도의 공공 노인복지시설의 최초 개소를 통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제공하고, 경영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 개소 3개월 이후부터는 독립채산제로 시설이 운영될 계획인 만큼, 운영체계의 장단점 및 장기적인 효과성 분석 등 사업부서의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